등록번호	의회사무국-372
등록일자	2016.1.19.
결재일자	2016.1.1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안팀장	의회사무국장	부의장	의장
박미영	선승화	정옥진	홍길식	01/19 代홍길식
협 조	의사팀장 권기영			

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
서 대 문 구

의회사무국

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
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가 폐회기간 중에 의원 발의되어 임시회 집회를 정하고자 함

Ⅰ. 관련법규

1. 지방자치법 제41조 (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) 제2항
2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제2항
3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(조사)

Ⅱ. 발의경위

□ 요구일시 : 2016. 1. 18.

□ 요구의원 : 황춘하 의원 (찬성자 8인)

□ 조사목적 :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실태 파악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민 편익 증진

□ 조사범위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 및 예산, 회계, 인사 및 기타 업무에 관해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□ 조사시행 위원회 : 행정복지위원회

Ⅲ. 임시회 집회 일자

□ 제221회 서대문구(임시회) 1차 본회의 상정(2016. 1. 26.)

Ⅳ. 행정사항

□ 동 조사발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(2016. 1. 20.) 협의 요청

- 근거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(의사일정)

> 의원으로부터 폐회 중에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집회일시를 정하여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해야하고 휴회기간 중이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. (지방의회운영/686P. 최민수 저)